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59

발의년월일 : 2019. 11. .
발 의 자 : 김 은 영 의원 (인)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지명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심의안건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11월 19일 ~ 11월 28일(9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이란 지표면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에 부여된 다음 각목의 이름을 말한다.
   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자연지형의 이름
   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든 인공지물의 이름
2. “총괄부서”란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표면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의 설치 및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조사한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4호에 따른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사업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개발사업의 참여 비율(지분)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대표 사업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총괄부서의 담당과장
   나.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무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재적위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지명의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에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간사는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의 간사는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명의 조사 등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총괄부서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지명의 조사 등) ①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제2조에 따른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이름을 제정 또는 변경할 대상의 지명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지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의 표기 오류 지명

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제정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은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조사 의견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제2조에 따른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에 대한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요청받은 사업부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점에서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을 인계받아 관리

하게 될 주관부서에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요청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의 지명 제정 및 변경을 통보 받은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의 조사 등을 완료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제출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지명의 관리 등)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관리대장 작성·비치
2. 지명이 부여된 지형물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유지관리
3. 국가기본도의 표기 관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연지형·인공지물에 부여된 지명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지명(제정 · 변경)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부서명		
	전화번호		
심의대상	지명의 종류		□ 자연지형 □ 인공지물
	현황	지형·지물명	
		위치 (소재지)	
	지명	제정·변경(안)	(한글) (영문)
		이유	
참고사항	설치년도		
	설치기관		
	주요내용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 지명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지명(제정 · 변경) 조사의견서(붙임서식) 1부.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지명(제정 · 변경) 조사의견서

1. 조사대상 :

2. 조사기간 :

3. 조사내용
   가. 지명의 종류 :

   나. 위　치 :

   다. 지명의 유래 :

      - 현재 호칭되는 지명 :

   라. 현장방문 등

   마. 지형 · 지물의 현장사진

4. 설명 :

5. 설치(제작)기관 :

6. 사업비(조달계획 포함):

7. 그 밖의 사항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지명(제정 · 변경) 신청(요청)서

신 청 인	사업(지구)명				
	사업시행자		연락처		
	주소				
지명대상	지명의 종류		☐ 자연지형 ☐ 인공지물		
	현황	지형·지물명			
		위치(소재지)			
	지명	제정·변경(안)	(한글) (영문)		
		이유			
참고사항	설치년도				
	설치기관				
	주요내용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지형·지물 설치(제작) 현황

1. 사 업 명 :

2. 설치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나. 위　치 :

다. 규　모 :

라. 모형 또는 형태: (별지 작성 가능)

마. 재　질 :

바. 기타 설계도면 등

4. 설치(제작)기관 :

5. 사업비(조달계획 포함):

6. 그 밖의 사항

7.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지명과 해양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지명 또는 해양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4. 24.>

1.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측량·지적 또는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3명
2. 외교부, 국방부 및 행정자치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명 이내

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다.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6. 11.>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